



명의변경(전매) 안내문

■ 명의변경(전매) 절차

※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분양권은 11/12(일) 부터 명의변경(전매)가 가능합니다.

- ① 매매 :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/ 증여 : 증여계약서 작성
- ② 기흥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→ 매매 :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수령 / 증여 : 증여계약서(기흥구청 민원지적과 검인 필) 수령
※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기흥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(☎ 031-324-613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중도금대출을 기신청한 세대의 경우 : 동호별 지정된 은행지점(중도금대출 안내문 참고) 방문 → 중도금대출 채무승계동의서 수령
※ 매도인(양도인), 매수인(양수인) 함께 은행지점 방문 必,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동호별 지정된 은행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④ 매도인(양도인), 매수인(양수인) 필요서류 구비하여 명의변경(전매) 신청일에 당사 주택전시관 방문
- ⑤ 사업주체 최종 승인 및 날인 후 매수인(양도인)이 계약서 수령(추후 계약서 수령 일정 별도 통지)

■ 명의변경(전매) 신청 일정

구분	일시	신청장소
명의변경(전매) 신청	11월 23일(목)~24일(금) 10:00~17:00 그 후 매달 셋째주 목요일, 금요일 (※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	당사 주택전시관 (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)

※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시 사전에 SMS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■ 필요서류

구분	일시				
기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양계약서(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) 원본 • 매매 :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,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• 증여 : 증여계약서(기흥구 민원지적과 검인 필) 				
매도인(양도인) ※ 본인 내방 必 (위임불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도용 인감증명서(본인발급,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) • 인감도장, 신분증(사본), 주민등록등본(상세) 				
매수인(양수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매수인 대리 위임이 불가합니다(매수인 내방 必) • 인감도장, 신분증(사본), 주민등록등본(상세) 				
대출 승계 (중도금대출 신청 세대에 한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승계동의서(은행지점에서 작성 : 매도인, 매수인 함께 지점방문 必) 				
상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관계증명서(망인) • 사망진단서 또는 망인 말소자 초본 • 공증받은 재산상속협의서(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전원 자필 기재 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 • 상속대상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, 신분증(미성년자는 학생증 등 첨부) ※ 상속대상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및 가정법원 결정문(지분에 대한 상속 명기되어 있어야 함) • 특별대리인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				
협의 이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의이혼 확인서(법원발급) • 재산분할 협의서(공증) 				
대리인 (위임시 추가서류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매수인(양수인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임자(매수인)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자(매수인) 자필 위임장 • 위임자(매수인) 인감증명서(본인발급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불가 • 수임자(대리인) 신분증(사본) • 필요시 추가 입증 서류 </td> </tr> <tr> <td>매도인(양도인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도인(양도인)은 대리 위임 불가(반드시 본인 내방) </td> </tr> </table>	매수인(양수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임자(매수인)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자(매수인) 자필 위임장 • 위임자(매수인) 인감증명서(본인발급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불가 • 수임자(대리인) 신분증(사본) • 필요시 추가 입증 서류 	매도인(양도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도인(양도인)은 대리 위임 불가(반드시 본인 내방)
매수인(양수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임자(매수인)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자(매수인) 자필 위임장 • 위임자(매수인) 인감증명서(본인발급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불가 • 수임자(대리인) 신분증(사본) • 필요시 추가 입증 서류 				
매도인(양도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도인(양도인)은 대리 위임 불가(반드시 본인 내방) 		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주민등록등본 대체 서류 • 국내에 거소지가 없는 경우 : 거주사실증명서(외국 관공서 발급 및 공증 후 국내 공증기관이 번역문 공증) • 국내에 거소지가 있는 경우 :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(국내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) ※ 전자수입인지(15만원) 구매 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 구매 후 분양계약서와 함께 보관(*매매만 해당, 인지세법 제8조 3항에 의거,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하여야 함) 				

■ 유의사항

- 중도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대출승계 확인 후 명의변경(전매)이 가능하며, 매도인(양도인)이 대출을 상환할 시 명의변경(전매)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대출을 승계하여 채무승계동의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- 총 분양대금의 10% 이상의 미납분이 남아있어야 명의변경(전매)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연체중인 계약자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연체대금 및 연체료 미납시 명의변경(전매) 신청이 불가합니다.
(연체대금 및 연체료 완납시 가능)
-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“상세”로 본인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며, “주민번호 뒷자리” 전체 공개 필수입니다.
- 명의변경(전매)은 신청 후 약 2~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, 명의변경(전매)이 완료된 계약서는 매수인이 직접 주택전시관에서 방문수령 하셔야 합니다.